

#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187
----------	------

발의연월일 : 2025년 11월 일

발의자 : 정혜영 의원

## 1. 제안이유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지원사업 및 지원중지(안 제6조 및 제7조)
- 마. 환수조치 및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8조 및 제9조)

## 3. 제정안 : 덧붙임

##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미혼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아동으로서 미혼모·미혼부의 자녀를 말한다.
4. “미혼모·미혼부 가족”이란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미혼부 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미혼모·미혼부 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원사업 및 추진방법
3.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혼모·미혼부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미혼모·미혼부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혼모·미혼부 가족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2. 사회적 편견 해소와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의 산전·산후 진료 지원
4. 미혼모·미혼부의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치료
5. 미혼모·미혼부 가족의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지원

6. 취업·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7.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하남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미혼모·미혼부 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1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